KOSHA GUIDE

C - 97 - 2022

- (바) "권상하중"이라 함은 타워크레인이 지브의 길이 및 경사각에 따라 들어 올릴수 있는 최대의 하중을 말한다.
- (사) "횡행"이라 함은 트롤리(trolley) 및 달기기구가 지브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말하다.
- (아) "자립고"라 함은 보조적인 지지·고정 등의 수단 없이 설치된 타워크레인 의 마스트 최하단부에서부터 마스트 최상단부까지의 높이를 말한다.
- (자) "순간풍속"이라 함은 하루 중 바람이 순간적으로 가장 세게 불었던 때의 풍속을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관계법령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하면 타워크레인 설치·조립·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여야 한다.

- (1)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(가)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
 - (나) 설치·조립 및 해체순서
 - (다) 작업도구·장비·가설설비 및 방호설비
 - (라)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
 - (마)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
- (2) 사업주는 (1)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